

대학의 산업재산권 교육 현황 및 활성화 방안

1. 머리말

1995년 WTO 출범 이후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존의 틀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정보의 존(Information Based) 관련 발명인 BM(Business Model) 특허로 대표되는 정보 산업과 생명공학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 마련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고, 이에 따라 최근에는 국가간 통상마찰 또는 특허권 침해에 관한 언론보도가 결코 낮설게 느껴지지 않을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는 기업체 또는 기업 부설 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연구업적을 특허화하여 양적으로는 적어도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다출원 국가로 성장하였으나¹⁾ 원천기술특허의 절대부족등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IMF 구제금융 시대의 도래에 따른 급격한 출원 감소로 인하여 지식정보화 시대의



권혁성

특허청 심판원 심사관

1)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1996년도 총 출원건수에서 288,422건으로 일본의 644,622건과 미국의 452,145건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변시연구,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8. 11. 226쪽)

세계적인 흐름에 합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의 국가경쟁력 강화 수단을 위해서는 산업재산권 출원 및 관리 전반에 걸쳐 양과 질의 겸비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우수한 인적 자원이 결집되어 있는 대학의 역할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다.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수평적 교류가 가능하고 창조적 연구활동의 산실이며, 최근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학내 벤처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점에서, 연구업적의 특허화 전략과 이공계 대학 교수와 학부 학생 및 대학원생의 특허마인드의 고취는 지식정보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적어도 향후 국내 지식산업을 선도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재산권 교육은 나름의 의미가 있는 교육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 대학의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공학교육의 일환으로 요구되는 산업재산권 교육방법 및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2. 산업재산권의 개념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은 산업적, 과학적, 문학적 및 예술적 분야에 있어서의 지적활동으로부터 나오는 법적인 권리를 의미하며 따라서 지적재산권법은 지적인 물품과 서비스상의 이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권리를 부여해 줌으로써 창작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전통적으로 두 분류 즉 “산업

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되는 바, “저작권”은 일정기간 동안 정신적 창작물(문학, 음악, 예술)의 이용을 허여 하거나 금지시키기 위하여 작가와 정신적 창작물의 창작가들에게 어떠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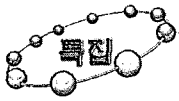
광의의 저작권은 엄밀한 의미상의 저작권 보호뿐만 아니라 보통 실연가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라디오 및 TV 방송에 있어서의 방송사업자의 권리 등을 의미하는 “저작인접권”이라 불리는 것까지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산업재산권”은 협의로는 특허·실용신안·상표 및 의장에 관한 권리를 의미하고, 광의로는 상기의 네 가지 권리 외에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권과 영업비밀 보호를 포함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 중 기본이 되며 모든 국가가 가장 중요시하는 특허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제까지 발견된 경험칙에 의해서 인간사회의 수요를 창출해 낼만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하여 이를 재산가치 있는 권리로 인정한 것으로 최근 특허의 대상은 앞서 기술한 BM 관련 특허를 포함하여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이와 같은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최근의 국제적인 이슈와 흐름에 대하여 소개하기로 하고, 본고에서는 국내 대학의 산업재산권 교육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3. 국내 대학의 산업재산권 교육 현황

현재 국내에는 1994년 3월 개원한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의 지적재산권법학과를 시작으로 하여 지적재산권 또는 산업재산권 관련 강의가



3개의 학부과정과 7개의 대학원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표 1 참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기 과정들은 모두 인문사회계열에 개설되어 있으며, 대학원의 경우 대부분이 특수대학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또한 야간과정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대상은 변리사, 변호사, 특허청 공무원, 일반 기업체의 산업재산권 관리부서 직원 및 특허법률사무소의 직원 등 이미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여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인이 대부분이다.

개설된 학과목을 살펴보면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과 내의 산업재산권 전공의 경우 특허법, 상표법, 의장법, 특허심사·심판실무, 상표심사·심판실무, 의장심사·심판실무, 산업재산권분쟁사례, 산업디자인 및 정보통신과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산업재산권 전반에 걸친 포괄적이고도 전문화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이공계 대학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재산권 관련 강의는 1999년부터 대진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개설중인 발명특허개론 강의와 대전 대덕대학의 인터넷 계열 학과에서 2000년 1학기에 개설된 지적재산권법 강의, 건양대학교에서 교양과목의 일환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정도이다.

물론 과거에 몇몇 대학교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강의가 진행된 바 있으나, 대학 자체의 교수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산업재산권 분야에 근무하는 외부전문강사에 의존한 특강 형식의 강의였다.

이와 같이 현재 국내의 산업재산권 관련 강의는 대부분 인문사회계열 중심의 교육임과 동시에 특허분야 직업인의 교육을 위한 대학원 강의이며 학부과정을 위한 개설 학과 또한 그 범주 안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기술적 전문지식을 추구하는 이공계

표 1. 지적재산권 관련 학과 운영 대학(원) 현황(2000. 6월 현재)

과 정	교 명	학 과 명	입학정원	개설연도	비 고
학부과정 (4년)	경기대학교	경상대학(경제학부) 산업재산권학 전공	30~40명(70명중)	'95. 3	야간과정
	인하대학교	법과대학(법학부) 지적재산권학 전공	40명	'98. 3	
	한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부) 지적재산권법학 전공	40명	2000. 3	
대학원과정 (2년 6월)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무학과	약간명(76명중)	'96. 3	특수대학원 야간과정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과	약간명(70명중)	'96. 3	
	국민대학교	산업재산권대학원 산업재산권학과	약간명(45명중)	'98. 3	
	배재대학교	법무대학원**	30명	2000. 3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과	66명	'94. 3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50명	2000. 3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특수법무학과	약간명	'96. 3	
계	대학 3 대학원 7				

** 종전의 국제통상대학원 특수법무학과('98. 3월 개설)를 신설 법무대학원으로 이전함.

대학생들에게는 다소 법이론 해석에 주안점이 있는 상기 전문과정이 낯설기도 하거니와 개발된 연구과제의 특허화 차원에서 본다면 한정된 시간 내에 발명 대상의 범위 도출과 특허대상의 판단 여부, 출원절차, 선행기술조사 방법 및 청구범위의 해석 등에 관한 보다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이공계 학부생을 위한 산업재산권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향후 자신이 연구나 생산의 주체가 되었을 때 이미 습득한 산업재산권 관련 지식을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의 교육이 절실하며 또한 현재의 주어진 제반 여건상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된다.

4. 공과대학내 산업재산권 교육 모델의 제안

4.1 특허넷 시범대학의 활용

매년 새로운 기술인력들이 공학교육을 이수하고 사회에 진출하고 있으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포함한 출원절차 및 선행기술 관련 정보 검색에 대한 실무적인 교육이 미흡한 상태를 개선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지적재산권 마인드를 갖춘 우수한 기술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하여 특허청에서는 1999년 12월 20일 일정 규모의 전산교육장 보유, 전담교수의 지정 및 학생들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 실시 등의 지정요건을 갖춘 대학의 신청을 받아 전국의 50개 대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은 산업적, 과학적, 문학적 및 예술적 분야에 있어서의 지적활동으로부터 나오는 법적인 권리를 의미하며 따라서 지적재산권법은 지적인 물품과 서비스상의 이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권리를 부여해 줌으로써 창작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전통적으로 두 분류 즉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되는 바, “저작권”은 일정기간 동안 정신적 창작물(문학, 음악, 예술)의 이용을 허여 하거나 금지시키기 위하여 작가와 정신적 창작물의 창작자들에게 어떠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학²⁾(4년제 대학 47개, 2년제 대학 3개)을 특허넷³⁾ 시범대학교로 지정한 바 있다.

본 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전자출원제도 교수요원 양성교육 지원사업으로 전자출원제도에 대한 교육을 담당할 특허넷 시범대학교 전담교수에 대한 무료 교육 실시 및 관련 자료의 제공, 둘째 특허청에서 매월 2회 발간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공보 CD-ROM을 지속적으로 무상 제공하며, 셋째 특허넷 시범대학교의 전담교수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지적재산권 및 발명·연구활동에 대한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 제공 및 특허청에서 발간되는 다양한 지적재산

2) 지역별로 보면 서울/인천/경기 14, 부산/경남·북 15, 광주/전남·북 5, 대전/충남·북 12, 강원 3, 제주 1개교이다.

3) 특허넷(KIPO-Net) 또는 특허넷 시스템이라 함은 이제까지 서면처리, 수작업 등에 의존해 오던 기존의 산업재산권 행정업무처리를 전산화하여 안방출원, 부서접수, 심사, 심판 등록 및 공보 발간에 이르기까지 통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말한다.



권 관련 정보를 특허넷 시범대학교 전담교수들에게 푸쉬메일로 자동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넷째 지적재산권 출원절차 및 선행기술 정보검색 등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이 포함된 표준교재를 개발하여 각 시범대학교에 보급하며, 다섯째 심사관의 순회교육과 매년 우수 특허넷 운영대학을 선정하여 운영예산을 지원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특허넷 시범대학의 운영 목표가 1999년 1월 2일부터 시행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전자출원 제도의 저변확대에 그 근본 취지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공계 대학에서의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실무 위주의 교육이라면 특허넷 시범대학교로 지정된 대학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상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본다.

한편 특허청에서는 특허넷 시범대학의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므로 앞으로 보다 많은 대학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특허청에서도 기 지정된 대학과 향후 신청할 대학들의 철저한 관리 및 실질적이고도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다 다양화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후속조치를 강구 중에 있다.

4.2 과목개설 형태와 담당교수

특허관련 강의를 개설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것이 강의를 이끌어갈 교수와 교재의 선택, 시간의 배정 및 강의내용의 전개방법이라면 이중 가장 중요한 문제가 담당교수의 확보에 관한 문제이다.

몇 명의 담당교수가 필요한가에 관한 수적인

문제는 개설강좌가 단과대학 기준으로 개설되는가 아니면 학과단위로 설치되는가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지만 현재의 여러 여건상 단과대학에 교양전공 형태로 한 학기 또는 일년 과정으로 이루어짐이 가장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전공학과에 따라 세분화되어 강의가 이루어져야 할 몇몇의 분야, 예를 들면 생명공학 또는 신물질 개발에 관련된 화공, 화학, 생화학, 약학 및 금속/재료과나 인터넷 관련 BM특허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전자, 전산학과는 일반적인 발명의 개론과 함께 해당 발명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지만 이는 별도의 세미나 또는 전공 변리사나 해당분야 심사관의 특강 형식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공계 대학 그것도 학부과정의 교양과목으로서의 산업재산권 교육이라면 학과단위별 과목 개설은 현실적으로 다소 무리함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당교수의 수는 이공계 대학 내 2-3명의 인원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출원경험이 있는 교내의 이공계 교수나 외부 초빙 형태의 강사 또는 겸임교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라면 특허넷 시범대학교의 경우에는 이미 전담교수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전담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강의과목 개설 내지 운영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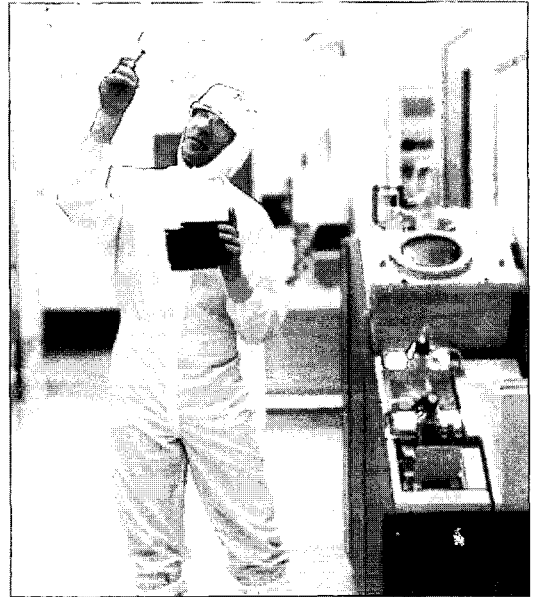
현재 특허청에서는 대학생들에 대한 전자출원제도 관련 교육을 특허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각 시범대학교의 전담교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

단 하에 2000년도 전자출원제도 무료 위탁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바, 이의 활용과 국제특허연수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종래의 이공계 교수를 위한 특허연수과정(현재 금년은 하계교육이 8월 16일부터 8월 18일, 동계교육이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시행될 계획이다.) 또는 별도의 특허넷 전담교수를 위한 교육이 계획 중에 있으므로 상기 이공계 교수를 위한 특허연수과정이나 별도의 이러한 교육을 기초로 하여 강의내용 및 강의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다만, 이 때의 교육은 단순한 홍보차원의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산업재산권 전반에 관한 교육은 물론 청구범위 해석을 위한 교육 및 선행기술 조사방법과 전자출원을 위한 기본적인 고도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전공학과에 따라 분과를 나누어 앞서 기술한 해당 학과의 성격에 맞는 분야별 심사기준 내지 청구범위 해석을 위한 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산업재산권을 전공한 외부 초빙 형태의 강사 또는 겸임교수에게 강의를 일임시키는 후자의 경우는 강의방법이나 강의내용에 관한 별도의 예비적 교육이 필요치 않고 보다 심화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산업재산권에 대한 대학 자체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다소의 초기 투자와 노력이 수반되더라도 전자의 방법이 보다 바람직할 것 같다.

물론 대학 내 출원과 학내 창업이 활성화되는 최근의 추세를 감안할 때 산업재산권 교육 뿐만 아니라 특허관리 내지 기술이전 단계까지



고려한다면 특허전문가를 대학에서 전임강사급 이상의 정식 교직원으로 고용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한가지 더 부언하고 싶은 것은 학외 전문가의 도움을 원한다면 단순한 교수요원의 충원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지적재산권 또는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특허청과 공동으로 개발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실례로 지난 6월 9일 목원대학교와 특허청은 지적재산권의 인식확산을 위한 세미나 및 교육과정등 관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연구·교육 인력을 교류하며 교육시설등도 공동으로 활용키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 인프라를 상호 이용하고 아울러 필



요한 교재개발이나 강의방법 또는 학내 창업보육센터의 지원 등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앞에서 열거한 산적한 당면과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3 교재 및 강의의 방식

현재 시중에 출간되어 있는 산업재산권 관련 서적들은 대부분이 변리사 수험서적이어서 법이론 해석과 시험문제 해석에 주안점을 둔 다소 이론적인 전공서적들이다.

따라서 이공계 대학생들이 산업재산권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청구범위의 해석 및 실제 출원을 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해서는 부족함이 없지 않아, 실무에 중점을 둔 한 학기 또는 일년 정도의 대학강의를 위한 통합된 교재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특허청에서는 지적재산권 출원절차 및 선행기술 정보검색 등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이 포함된 표준교재를 개발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교재개발의 범위가 다소 확대되어 전자출원을 이용한 출원절차의 소개 내지 정보검색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산업재산권의 개념과 발명의 대상 및 청구범위의 해석까지를 포함한 단행본의 종합적인 교재개발이 이루어져 대학에서의 강의교재 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체에서도 지침서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교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이러한 교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분야별로 참고가 될만한 서적을 간단히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적재산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할 수

있는 서적으로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전 세계 각국의 지적권 업무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교재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발간한 “Intellectual Property Reading Material”을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번역·출간한 지적재산권총론을 들 수 있겠다.

지식재산권 제도의 역사와 발전과정에서부터 지적재산권의 구체적인 보호 양태, 절차, 기술 이전 및 라이선싱과 지적권 관련 국제협약 뿐만 아니라 최근 주목을 받고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생명공학과 같은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가 알기 쉽게 기술되어 있어 기본서로서 손색이 없다.

문헌에서만 보아오던 이러한 지식재산권 또는 산업재산권이 실제 어떠한 형태로 무기화되어 각국간의 무역전쟁 또는 기업간 분쟁사태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생생한 사실들을 모아 새삼 그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서적으로는 F. Warshofsky의 “Patent Wars”를 특허청 특허분쟁연구회에서 번역·출간한 “특허전쟁”(세종서적)이 있다.

전자출원 절차 내지 선행기술 조사를 위한 정보검색 지침서 형태의 자료로서는 특허청에서 발간한 “전자출원개론”, “특허넷 사용자 안내서” 및 “인터넷을 이용한 특허정보” 등 다수의 교재가 개발되어 있어 비교적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한편, 앞서 열거한 여러 분야의 지식을 단행본에 모아 이야기식으로 전개한 “나만의 아이디어 발명·특허로 성공하기”(유재복, 새로운 제안)도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재인 듯 싶다. 비교적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청구범위의 작성 및 해석에 관한 설명

서로는 “특허청구범위”(김원대 譯, 한국공업소유권법학연구소), “특허청구범위의 작성과 회피설계”(박대진, 한빛지적소유권센터) 등의 교재가 있으나 이미 기본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준전문가를 위한 설명서이므로 특허마인드의 고취 내지 단시간내 특허 출원명세서 형태의 간단한 특허제안서 작성 정도를 목표로 하는 대학교재로서는 그 내용이 다소 전문적이어서 향후 교재개발 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분야이기도 하다.

이상 강의교재로서 갖추어야 할 몇 가지 분야에 대한 참고가 될 만한 기존의 간행물을 소개하였는 바, 빠른 시일 내에 위에 언급된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정리된 강의용 교재의 출판을 기대해 본다. 끝으로,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업으로의 전개방식이다.

즉, 청구범위의 작성 및 해석에 관한 분야는 교재 내용의 탐독 내지 소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직접 권리화된 공보를 이용하여 확정된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는 해당 발명에 대하여 학생 스스로가 개량발명을 실시한다면 어떠한 구성요소를 어떻게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작성할 것인지를 직접 작성해 보도록 유도해 보는 것이다.

이 때 대상발명은 구성이 복잡하여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를 선택하기보다는 생활용품과 같이 구성이 단순하여 누구나 그 구조를 쉽게 변형 내지 개량할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대학생까지의 학생인 경우 출원료와 3년치 등록료가 무료인 점을 감안하여 이렇게 작성된 청구범위를 기초로 나름대로 특허성

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직접 출원을 유도함으로써 전자출원 절차 내지 명세서의 작성 방법까지도 스스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적어도 강의개설의 취지나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5. 결론

현재 국내 대학의 지식재산권 교육의 현황과 공과대학내 산업재산권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특허넷 시범대학의 활용, 과목개설 형태와 담당교수, 교재 및 강의의 방식 등에 관하여 평소 나름대로 생각한 바를 정리해 보았다.

필자가 특허청 심사관으로 재직하기 전 근무 하였던 대덕연구단지의 어느 국립연구소 강당에는 “과학기술 경쟁은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늘 걸려 있었다.

당시 국가 핵심사업 중 하나의 국산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던 터라 그 뜻이 남달랐는데, 지식재산권 분야에 근무하는 지금 그 글이 더욱 크게 느껴짐은 막연한 직업의식 때문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주어진 국내의 환경과 시대가 적어도 기술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무한경쟁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과거의 발명은 필요에 의해 탄생하였지만 앞으로의 발명은 예측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어느 학자의 말처럼 미래의 기술주역들에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력과 이를 진정한 자기권리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의 활성화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며, 본고가 그러한 공학교육의 방향에 조그만 일조를 담당하기를 빌어 본다. (hyuksung@kipo.go.kr)